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가단6533 판결 [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 종결 2020. 11. 26

판결 선고 2021.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원사 등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 등을 해온 사실, ③ 원고는 피고의 원사 등 공급 요청에 따라 2019. 6.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지정해 준 피고의 거래처들에 게 원사 등을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와의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작성 한 거래처원장(갑 제1호증)에는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30,596,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남아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59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으로 청구하고 있는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은 원고 개인이 아닌 'C'가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보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이 아니며,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원사 등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원고 개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고 있는 미지급 물품대금은 과다 계산되었고, 실제로 남아있는 미지급 물품대금은 그에 미치지 못함에도 과잉청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그 동안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피고와의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작성한 거래처원장(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이 허위 라거나 원고가 미지급 물품대금을 과다 계산하여 과잉청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피고는, 피고 역시 하청업체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적법한 항변사유로 볼 수 없다.

라. 결국 피고의 위 주장 등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장동민